

'99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

의안번호
57

제안연월일 : 1998. 12. 07.
제안자 : 거창군수

1. 제안 이유

-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: 군청 주차장 부지
 - 토지 2필지 286㎡, 건물 2동 99.17㎡
- 매각코자 하는 재산 : 700㎡ 이하의 영세규모토지 9필지 842㎡
 - 사유건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영세규모 토지를 대부자에게 매각 : 8필지 660㎡
 -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 : 1필지 182㎡

2. 재산의 표시

구분	재산종별	재산소재지	지 목 (구조)	수 량 (㎡)	예정금액 (천원)	비고
	소계			385.17	177,900	
취득 (매입)	토지	거창읍 상림리 59-7 외 1필지	대 지	286	143,000	
	건물	거창읍 상림리 59-7 외 1동	목조·와가	99.17	34,900	
처분 (매각)	토지	거창읍 상림리 145-75 외 8필지	대지 : 3 잡종지 : 4 전 : 1 임 : 1	842	176,336	

※ 위 예정금액 중 취득은 '97년 중 감정가액, 처분은 공시지가이므로 '99년 감정 후 변동될 수 있음.

3. 근거 및 참고자료

- 지방재정법 제 83조 : 잡종재산의 처분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2호 내지 25호 : 수익계약 사유
- '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지침